

# 휴안 더갤러리 오라 입주자모집공고



※ 본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안내**
  - 휴안 더갤러리 오라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본주택 방문 시 당사 휴안하우징갤러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여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휴안하우징갤러리 (<https://huan-housing.co.kr/>) 입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확인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하여 건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첨자별 방문가능 일시가 상이하며, 입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비 접촉 체온측정기를 통한 체온 37.5도 넘을 경우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 접촉 체온계, 방명록 작성(신분 확인)등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1. 건본주택 방문 시 분양완료 이후에는 계약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1인만 입장 가능 / 대리인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2. 건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 측정 결과 37.5도가 넘을 경우
    - 건본주택 입장 전 방명록 작성 및 신분 확인에 불응할 경우

※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건본주택 관람이 불가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당첨(예비입주자 포함)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사전 방문예약제 실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안 더갤러리 오라 (휴안하우징갤러리내 건본주택) 분양 상담전화 (☎1661-0449)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함)
- 본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 03. 14 (월) 입니다.(청약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착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공동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을 모두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4)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

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1년이상(2021.03.14.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가 1년 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호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9.1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지촉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 1순위 : 입주자지촉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지촉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 방식은 기준(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 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

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출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공동주택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시행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휴안하우징갤러리**(http:// https://huan-housing.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 없음(「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이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 신고합니다. 이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 협조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2년 03월 24일 (목)	2022년 03월 25일 (금)	2022년 3월 31일 (목)	2022년 4월 1일 (금)~ 2022년 4월 4일 (월)	2022년 4월 11일 (월) ~ 2022년 4월 13일 (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휴안 하우스갤러리 (10:00 ~ 17:00)	휴안 하우스갤러리 (10:00 ~ 17: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안 하우스갤러리</li> <li>-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li> <li>- * 서류심사 및 부적격 검수 일정 및 운영은 변경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안 하우스갤러리</li> <li>(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노형동 3794-11)</li> <li>휴안 하우스 갤러리 2층</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시 주택과 -15425호 (2022.03.10.))** 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시행위탁자 : (주)선 / 시행수탁자 : 무궁화신탁(주) / 시공사 : (주)현중합건설, (주)에스에이치종합건설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1364-1, 1364-3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7층 1개동, 총 48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08월 예정 (단, 신탁업자가 관리형태지신탁계약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이행하는 경우에는 2024년 02월 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자 는 추후에 통보함 )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2000112	01	70.4955	70	70.4955	24.6868	95.1823	89.5695	184.7518	40.31	5	5	0
		02	70.4955A	70A	70.4955	24.6868	95.1823	89.5695	184.7518	40.31	1	1	0
		03	78.6451	78	78.6451	22.4505	101.0956	89.5695	190.6651	44.97	5	5	0
		04	78.6451A	78A	78.6451	22.4505	101.0956	89.5695	190.6651	44.97	1	1	0
		05	79.0051	79	79.0051	22.4835	101.4886	89.5695	191.0581	45.18	15	15	0
		06	79.0051A	79A	79.0051	22.4835	101.4886	89.5695	191.0581	45.18	2	2	0
		07	79.0051B	79B	79.0051	22.4835	101.4886	89.5695	191.0581	45.18	1	1	0
		08	83.9718	83	83.9718	22.8998	106.8716	89.5695	196.4411	48.02	6	6	1
		09	84.1076	84	84.1076	22.3163	106.4239	89.5695	195.9934	48.10	10	10	0
		10	84.1076A	84A	84.1076	22.3163	106.4239	89.5695	195.9934	48.10	2	2	0
합 계											48	48	1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위 정리에 따라 계약 면적과登記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나 착오 없으시기 바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0.3025 또는 ㎡÷3.3058)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주택형별로 공급 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공급 물량이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청약자는 각각의 버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홍보 제작물 및 입주자모집공고의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휴안 더갤러리 오라 (휴안 하우징 갤러리2층)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 주택형 약식표기

(단위 : ㎡)

입주자 모집공고(청약 시 주택형)	70.4655	70.4655A	78.6451	78.6451A	79.0051	79.0051A	79.0051B	83.9718	84.1076	84.1076A
약식표기 주택형	70	70A	78	78A	79	79A	79B	83	84	84A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85㎡ 초과 주택형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약식표기	세대수	호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	2회	1회(10%)	2회(10%)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후30일 이내	2022.10.30	2023.04.30	
70	5	2	3	1	230,175,000	281,325,000		511,500,000	25,575,000	25,575,000	51,150,000	51,150,000	358,050,000
			4	1	232,875,000	284,625,000		517,500,000	25,875,000	25,875,000	51,750,000	51,750,000	362,250,000
			5	1	235,575,000	287,925,000		523,500,000	26,175,000	26,175,000	52,350,000	52,350,000	366,450,000
			6	1	238,275,000	291,225,000		529,500,000	26,475,000	26,475,000	52,950,000	52,950,000	370,650,000
			7	1	240,975,000	294,525,000		535,500,000	26,775,000	26,775,000	53,550,000	53,550,000	374,850,000
70A	1	2	2	1	241,425,000	295,075,000		536,500,000	26,825,000	26,825,000	53,650,000	53,650,000	375,550,000
78	5	6	3	1	245,025,000	299,475,000		544,500,000	27,225,000	27,225,000	54,450,000	54,450,000	381,150,000
			4	1	247,725,000	302,775,000		550,500,000	27,525,000	27,525,000	55,050,000	55,050,000	385,350,000
			5	1	250,425,000	306,075,000		556,500,000	27,825,000	27,825,000	55,650,000	55,650,000	389,550,000
			6	1	253,125,000	309,375,000		562,500,000	28,125,000	28,125,000	56,250,000	56,250,000	393,750,000
			7	1	255,825,000	312,675,000		568,500,000	28,425,000	28,425,000	56,850,000	56,850,000	397,950,000
78A	1	6	2	1	260,775,000	318,725,000		579,500,000	28,975,000	28,975,000	57,950,000	57,950,000	405,650,000
79	15	3,4,5	3	3	245,025,000	299,475,000		544,500,000	27,225,000	27,225,000	54,450,000	54,450,000	381,150,000
			4	3	247,725,000	302,775,000		550,500,000	27,525,000	27,525,000	55,050,000	55,050,000	385,350,000
			5	3	250,425,000	306,075,000		556,500,000	27,825,000	27,825,000	55,650,000	55,650,000	389,550,000
			6	3	253,125,000	309,375,000		562,500,000	28,125,000	28,125,000	56,250,000	56,250,000	393,750,000
			7	3	255,825,000	312,675,000		568,500,000	28,425,000	28,425,000	56,850,000	56,850,000	397,950,000
79A	2	3,4	2	2	251,775,000	307,725,000		559,500,000	27,975,000	27,975,000	55,950,000	55,950,000	391,650,000
79B	1	5	2	1	260,775,000	318,725,000		579,500,000	28,975,000	28,975,000	57,950,000	57,950,000	405,650,000
83	6	1	2	1	254,700,000	311,300,000		566,000,000	28,300,000	28,300,000	56,600,000	56,600,000	396,200,000
			3	1	257,400,000	314,600,000		572,000,000	28,600,000	28,600,000	57,200,000	57,200,000	400,400,000
			4	1	260,100,000	317,900,000		578,000,000	28,900,000	28,900,000	57,800,000	57,800,000	404,600,000
			5	1	262,800,000	321,200,000		584,000,000	29,200,000	29,200,000	58,400,000	58,400,000	408,800,000
			6	1	265,500,000	324,500,000		590,000,000	29,500,000	29,500,000	59,000,000	59,000,000	413,000,000
			7	1	268,200,000	327,800,000		596,000,000	29,800,000	29,800,000	59,600,000	59,600,000	417,200,000
84	10	7,8	3	2	257,400,000	314,600,000		572,000,000	28,600,000	28,600,000	57,200,000	57,200,000	400,400,000
			4	2	260,100,000	317,900,000		578,000,000	28,900,000	28,900,000	57,800,000	57,800,000	404,600,000
			5	2	262,800,000	321,200,000		584,000,000	29,200,000	29,200,000	58,400,000	58,400,000	408,800,000
			6	2	265,500,000	324,500,000		590,000,000	29,500,000	29,500,000	59,000,000	59,000,000	413,000,000
			7	2	268,200,000	327,800,000		596,000,000	29,800,000	29,800,000	59,600,000	59,600,000	417,200,000
84A	2	7,8	2	2	268,650,000	328,350,000		597,000,000	29,850,000	29,850,000	59,700,000	59,700,000	417,900,000

## ■ 공통 유의사항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각 주택형의 세대별 1차 계약금 납입 이후 2차 계약금 납부일은 계약체결 이후 30일 이내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일자에 납부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공급면적(㎡) 또는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본 주택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무상으로 시공됨.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 동, 층, 향, 일조, 조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택형별, 층별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고 면적 계산상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단수 조정 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 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감소,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에는 예정 2022.10.30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 검사일 이후 납부하되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득하고 입주할 경우,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하고, 10%금액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가 가능하되, 이 경우의 구체적인 납부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라 정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지연이자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 됨)
- 본 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당첨자 효력 상실, 그에 따른 공급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사본 불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임.
- 중도금 및 잔금 전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선납 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음.(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관리비 전수금을 부과함.
- 본 아파트공동주택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태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자가 1년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태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추가 접수 불가)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악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li>•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li> <li>•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기준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항-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②목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청약 가정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li> <li>※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li> <li>(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정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정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p>■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p>■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p> <p>■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li> </ol> <p>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p> <p>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ol> <p>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p> <p>■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o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li> </ol>
---

<p>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p> <p>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p> <p>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p>8. 무허가건물[중정의 「건축법」(법을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p> <p>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p> <p>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p>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정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li> </u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가 1년 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점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물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li> <li>•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공동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 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li> </ul>

III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2년 03월 24일 (목)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li> <li>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2순위	2022년 03월 25일 (금)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④kb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에·부금 포함) 통장</li> <li>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ul>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b>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b>자필 서명한 위임장</b>(‘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원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란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 일반공급 자격검증 구비서류(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일반공급 (가정제, 예비입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 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 청약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1.11.12.)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 및 청약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청약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인 인적사항기재)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05. 7.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 일정 및 계약장소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 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숲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3.31.(목) ~ 2022.04.09 (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3.31.(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 시 건물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유지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세대 발생 및 소명 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미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 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됨.

V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전 서류 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 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하기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등) 뒀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적격검수,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안내

구분	자격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시	2022년 4월 1일 (금) ~ 2022년 4월 4일 (월) 4일간 10:00 ~ 17:00	2022.04.11(월) ~ 2022.04.13(수) 3일간 10:00 ~ 17:00
장소	휴안 하우스갤러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794-11) 2층	
대상자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당첨자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발행분에 한함	

※ 당첨자 적격검수 제출 일정 기간 내 감영증 예방관리 수칙의 정부 시책에 따라 방문예약제로 운영하오니 견본주택 대표번호(1661-0449)로 사전방문예약 신청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2.04.11(월) ~ 2022.04.13(수) 3일간 10:00 ~ 17:00	휴안 하우스갤러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794-11)

※ 당첨자는 당첨 동, 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외 모두 제3차로 간주함,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각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자는 대리인 계약 불가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따라 추첨하여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 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2018.05.04.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됨
- 공동주택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새마을금고	9002-1978-4172-4	(주)무궁화신탁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시행위탁자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02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분양대금 지정된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시행위탁자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 1항 제1호 및 제 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체결 대상
납부기한	[분양계약] 계약체결일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방법	계약서 작성 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또는 우체국, 은행 방문하여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인터넷	기획재정부 정부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며, 미납부 또는 정부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1억원 이상~10억원 이하 : 15만원)를 납입하신 후 정부 수입인지를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2021.01.01.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6개월 초과(무(과소)납부 세액의 300%)**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준공예정일 : 2023년 6월 예정 (단, 신탁업자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 입주예정일 : 2023년 8월 예정 (단, 신탁업자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2024년 02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환경보전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입주 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연체 안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함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VI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은 사업주체에서 무상 제공하며 비확장 선택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구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은 관계법령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세대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무상으로 제공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무상제공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부담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 사시는 지역별 단열성능 확보제품으로 설치되며 창호 및 유리(원자재 브랜드, 제조사)는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별도 고치는 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공이 되는 것으로 제한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 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사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Ⅶ**      **유의사항**

※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동사항

구분	내용
공급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합니다.</li> <li>●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컷, 단위세대는 2021년 10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li> <li>●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카탈로그 등 홍보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구역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li> <li>●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li> <li>● 홍보물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외부의 보행자 전용도로 및 토지계획이용계획도의 개발계획 등은 관련주체 소관으로 시행위탁자와 무관합니다.</li> <li>● 시설물, 외관, 색채 창호 조경계획등은 위치 및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옥상, 옥탑부위 의 외부구조시설 및 반사경 등은 표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li> <li>● 내용상에 기재된 교통, 학교 개설 및 배정 등은 사업주체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주관하는 것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면 이는 시행위탁자와 무관합니다.</li> <li>●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타입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타입별 공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제주시청, 사업주체 및 시공사, 대출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공급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관에 관련 내용으로 정보 제공 시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본 주택의 판매 시점 등 사업주체 여건에 따라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li> <li>●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제주시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관계자 분양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li> </ul>

및 조경 등을 본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공동주택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또는 원인 제공자(파손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이사 하셔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내 비상차량 도로를 활용 할 수 있으나 입주시 동시 입주 등으로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또는 사업주체가 통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만한 입주를 위해 도로는 일방통행 등으로 통제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하기로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 주요 내용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와 이미지(조감도)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지는 사업추진 여건에 따른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으로 토지 이용계획 및 지구 내 타 토지의 용도,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귀책 사유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시행위탁자와 무관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환경보전,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에는 계약을 체결한 품목 외에 전시품 등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등)은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므로 문의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관련 도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차·보도 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향후 지적공부 정리절차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잔금납부시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사업지는 여건에 따라 토지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인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등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사정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으로부터 대출비용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제주시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미제출과 같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

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행정구역 및 명칭, 동·호수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답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 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구획을 지정/분할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에 설치된 테라스 부분은 해당 세대가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게 되므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청약 및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며 여타세대는 해당세대가 테라스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사용 중지의 요구, 공동 사용 및 철거요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해당세대는 공용설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진입 요구시 반드시 개방하여야 하고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함을 인정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태양광 설치시 옥상이 공용면적임을 인지하고, 세대 전체를 위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에 동의하며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변경되어 이를 준수하고자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동질 및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시공범위는 타입별로 차이가 있사오니 반드시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주택형 및 세대별 단지배치 및 개인 취향에 따라 마감재변경(색상 등 포함), 위치변경(거실 위치 등)은 불가하오니 견본주택 및 도면 상 내용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등 모두 설치한 세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설치 및 시공내용,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배선관련 제품과 월패드, 주방TV 등 홈네트워크 관련제품사양 및 온도조절기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이 견본주택 설치주택형과 상이함을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당첨 시 동일한 타입 평면이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사항은 대관협의 및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사유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계약 전 인지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시설물(난간,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공동주택 단지명 및 동표시 등 각종 외벽 부착 사인물) 및 옥상 조형물, 색채, 저층 색채 등
  2. 조경시설물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위치 등
  3. 기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 본 공동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고유한 자산으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저하가 아닌 경우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적용 시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소명이 부족할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이 경우 납입한 분양대금은 환불이 가능하나, 별도의 환불에 대한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탈로그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조감도, 투시도, 각종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주변현황,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li> <li>●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합니다.</li> <li>●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 2 및 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구조적으로 공동주택과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각의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공동주택 축벽 로고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공동주택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물은 2021년 10월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li> <li>● 본 공동주택에는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li> <li>●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제주시,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동주택은 현장여건, 구조, 성능, 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li> <li>● 인허가 관청에서 본 공동주택단지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실시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과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변경(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단지 외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li> <li>● 사업지 인근 민가, 가설건축물 등이 있어, 이로 인한 조망, 생활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li> <li>● 본 공동주택 인근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압력조정설비(지역정압기 포함)를 부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도시가스 인입위치 및 정압시설 위치 및 규격 등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수 없습니다.</li> </ul>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위 학교 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구분	내용
동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외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li> <li>●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동의 경우 주행 차량과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단 지  단 지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외각부에 면한 경사면 처리는 상세설계 진행에 따라 구조 및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외각부에는 보행 안전을 위하여 난간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li> <li>●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외관디자인(마감재 패턴, 색채 및 사인물, 창호 색상 및 형태, 계단실 창호, 난간 형태 및 색상, 지붕 및 옥상구조물 형태 및 색채 등), 주차장 외벽과 옹벽의 형태, 색상 및 패턴, 외부계단과 문주의 위치 및 형태, 보도 포장 및 형태 등이 실시설계 및 공사 시 시공사 특화디자인 및 경관자문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주동 외부 색채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외부 공간에 조성되는 수목의 종류, 수량 및 위치, 외부 시설물의 종류, 형태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모형 및 각종 홍보물 이미지는 축소 제작되는 한계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색채, 패턴, 마감재질, 크기, 조경(수목의 종류, 위치 및 수량, 놀이터 및 휴게시설, 파고라, 수경시설 등) 및 각종 시설물(문주, 기계 및 전기관련실 급배기구, 외부 계단실 등)의 내용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형태와 위치는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대지 주위 도로폭, 도로선형, 조경 및 토목 시설물의 위치, 인접도로와의 레벨차, 옹벽의 높이 및 형태, 공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 저층부(PIT~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뿔칠/수성페인트가 혼용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석재/석재뿔칠/알루미늄시트/수성페인트의 혼용으로 마감되며, 석재뿔칠, 수성페인트의 적용범위는 현장 여건에 의해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현장여건 및 인테리어설계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배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세대는 소음 및 불빛, 분진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및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li> <li>●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깔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ul>

- 옹벽 등 단차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일, 조랑, 그늘 여부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됩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의 경우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출입구를 제외한 소형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는 사항 외의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변경처리 후 사업계획승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완료 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파일 및 기초형식 등은 굴토 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모형에 표현된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廻廊,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廻廊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지자체 조례와 사용성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지하층에 제연팬룸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세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C1 및 B1 등의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채광창 유무 포함) 등 공용부분은 공간 크기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크기, 색채 등이 동별로 상이할 있으므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크기 및 위치(자동폐쇄장치 설치 포함), 공용부 창호 프레임의 사양,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저층부의 석재마감 줄눈의 간격은 디자인 및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층 피트층과 면한 부위는 석재뿔칠 또는 수성페인트 마감이 적용됩니다.
- 우편물 보관함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1층 로비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형태(옥상 조형물, 축벽문양, 저층부 석재, 동 출입구, 옹벽), 재질 및 색채 등은 구조내력확보,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됩니다.
- TV 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방재실과 가깝고 전파수신이 양호한 공동주택 지붕(옥상)에 설치됩니다.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됩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상승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 식재계획으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방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조경계획은 사업계획변경승인 시의 도서내용을 충족하여 식재하되 그 식재위치는 식재의 생육환경과 형태, 크기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되어 배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 및 지하 주차장 동 출입구의 출입문, 복도, 경사로, 계단, 난간 등은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별 대지경계선 외부의 보행자전용도로는 본 사업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행위탁자와 무관합니다.</li> <li>● 대지 인접 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li> <li>● 건축물 내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 될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한전 인입 장비 및 한전 패드, 통신 인입 맨홀이 단지 내에 설치 되므로,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침해의 피해가 발생 할수 있고,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건축물의 측벽에 낙뢰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 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조경식재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li> <li>●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li> </ul>
공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 인근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등)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곱집기 및 마감재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은 기본시설 및 기본마감재는 제공되나, 내부 집기류 및 이동가구 등은 제외됩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내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세부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 등은 실제 시공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입주 전후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일정기간 운영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세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li> <li>●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모형 및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내외부 디자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외부 마감재 색상, 재질 및 패턴, 내부 평면 및 구조, 창호재질 및 형태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차량 차단기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현장여건 및 인테리어설계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배치, 마감재, 도어스펙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크기, 위치, 개소는 인·허가도서 기준으로 시공되고, 본 공사 시 위치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제기를 할수 없습니다.</li> <li>● 쓰레기분리수거시설(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의 인근에 위치하는 일부 세대는 악취, 해충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li> <li>● 입주 후 입주민 불편해소(입주관리, 하자접수 및 보수)를 위해 공용 공간을 시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li> </ul>
단지 공용설비 및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주차장 및 필로티의 동파우려부위에는 동파방지열선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에 따른 공용부의 전기료가 발생합니다.</li> <li>● 공용부위 조명 및 보안등,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제연헬륨D.A, 환기팬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li> <li>● 옥외 보안등 및 CCTV는 본 공사시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고 일부 사각 지대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li> </ul>

	<p>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p> <p>●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p> <p>●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 단지 진·출입부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결과 및 연접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지하주차장의 동별 주차배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없으며, 각동 출입구까지의 동선 길이가 다릅니다.</p> <p>●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제연휀룸D.A, 환기팬D.A 등)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지하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로 택배차량, 사다리차, 대형차 등의 진입은 불가능합니다.</p> <p>● 지하 주차장과 공동주택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지하주차장 구조는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지하주차장과 동하부 PIT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인허가 도면에 의거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공사중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표지판 및 전기자동차 외 충전구역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 설치됩니다.</p> <p>●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세대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 될 수 있습니다</p> <p>●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구배가 없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p> <p>● 공동주택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p> <p>● 단지 내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p> <p>●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 됩니다.</p>
단 위 세 대	<p>●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p> <p>● 본 공동주택 세대의 천천장높이는 기준층 거실기준 2,300mm이며, 욕실과 실외기실, 발코니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p> <p>●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p> <p>● 각 세대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 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 세대 내부가구(불박이가구, 화장대, 주방가구, 욕실장, 신발장, 욕실거울, 욕조)의 후면 또는 측면, 바닥면, 천장과 접하는 비노출면과 거울 후면을 포함한 비노출면은 별도의 마감(도배, 타일, 마루)을 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로 마감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 가변형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 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세대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p> <p>● 세대내의 일반 조적벽은 옹벽으로 비내력은 조적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 간 벽체 종류는 분양면적 내에서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li> <li>● 발코니 외부 샷시의 사양으로 인해 침실창 외부 골조 상단에 물 끊기 홈이 미설치 됩니다.</li> <li>●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샷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li> <li>● 발코니 확장 부분의 외부 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li> <li>●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 실외기실 천장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외부 샷시가 설치되는 벽면 하단 높이가 높아져 외부 샷시의 면적 및 크기가 줄어듭니다.</li> <li>●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덕트, 에어컨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li> <li>● 추후 설치한 전동형 빨래 건조대의 봉을 펼쳤을 경우 실외기실 도어와 간섭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공동주택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li> <li>●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 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과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에 설치된 루버의 설치 높이와 형태는 설비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창호의 크기 및 세부사양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5호)」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에 면하는 다용도실 문은 결로 및 단열 등의 하자를 고려하여 동등급이상의 자재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다용도실의 천장의 별도 마감은 없으며, 모델하우스의 천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 주동의 세대내 주방창은 모델하우스의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습과 동일하게 시공됩니다.</li> <li>● 세대내 설치된 플라스틱 창호 사용 시 심한 충격을 반복해서 가할시 변형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가구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의 벽, 바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제품이 동등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 및 다용도실 문은 본 공사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li> <li>●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화장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사용되는 타일류는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타일나누기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주방상판 및 벽체 제품 특성상 색상, 나눔부위가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 본 시공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강화대리석(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뒤틀선반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음. 재료의 접합연결부가 발생하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li> <li>●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li> <li>●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시공되며, 제품사양은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디자인 및 크기,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강마루 바닥재는 동급 이상의 제조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우드패턴 및 색상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출입구(발코니 등)의 사양, 크기, 개폐방향 및 손잡이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벽체로써, 조적벽이나 콘크리트벽보다 방음효과가 떨어지므로 실별로 다소 소음이 전달될 수 있고, 벽걸이형TV, 선반, 기타충량물을 설치할 경우 입주자의 별도 보강재 설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li> <li>● 외벽 및 세대 간 벽 등 단열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li> <li>● 가스배관과 간섭되는 주방가구 깊이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li> <li>●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배치되는 가구 및 기타 액세서리는 실시공시 좌우타입 세대 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	---

<p style="text-align: center;">단 위 세 대</p>	<p style="text-align: center;">기계설비/ 전기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실 천장에는 배관 또는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li> <li>●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li> <li>●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li> <li>● 제어시스템 및 온도조절기 등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다용도실 외부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되며, 가스계량기는 다용도실에 설치됩니다.</li> <li>●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른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됩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각 주동 지하층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도면을 확인하여 주시기</li> </ul>
--	--

	<p>바라며, 실제 시공시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장치가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등에 설치되며, 환기장치 가동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li> <li>● 전동형 빨래 건조대는 따로 설치 되지 않습니다.</li> <li>● 벽걸이 TV 설치시 전선, 케이블등이 노출 될수 있습니다.</li> <li>● 하이브리드 등 전기 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 부담입니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1층세대 제외)</li> <li>●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다용도실의 천장 높이 및 바닥 단 깊이 등은 본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현관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의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가구 상부장 및 수납의 크기 등은 기준층 세대와 1층 세대가 천장고 차이로 인하여 상이하게 시공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천장몰딩의 형태는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사용된 도배지는 하자방지를 위하여 제조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공용욕실 입구는 건식공간으로 바닥구배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li> <li>● 최상층 세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내의 조명, 디스플레이용 가구 및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시 제외됩니다.</li> <li>●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추가 선택품목(유상)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li> <li>●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준공도서에 따릅니다.</li> <li>●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수, 오수 배관의 위치, 선풍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 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향후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에는 계약을 체결한 품목 외에 전시품 등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 건립 유니트, 세대 모형, 주민공동시설,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설치)된 가구, 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 조경 및 식재, 차·보도 선형, 주변 환경, 부지 레벨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 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환경,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갯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서 실제 시공 시 관련 법령에 의거 변경(사양, 개수, 위치) 설치될 예정입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상의</li> </ul>

---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시공 범위는 타입별로 차이가 있사오니 반드시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주택형 및 세대별 단지배치, 개인 취향에 따라 마감재 변경(색상 등 포함), 위치 변경(거실 위치 등)은 불가하오니 견본주택 및 도면 상 내용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은 평면에 대해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을 통해 계약 전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구조 및 마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시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 등을 모두 설치한 세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설치 및 시공내용,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배선 관련 제품과 월패드, 주방 TV 등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사양 및 온도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79㎡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모형물과 홍보 제작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특약사항 본 내용은 본 공고의 어느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선이 (주)무궁화신탁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선임을 매수인은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무궁화신탁은 관련 법률 및 본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 (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선이 부담합니다.
- ㈜선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매수인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선 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선, (주)무궁화신탁, ㈜도현종합건설, ㈜에스에이치종합건설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 ㈜도현종합건설, ㈜에스에이치종합건설이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무궁화신탁이 본 사업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할 경우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은 최대 6개월 자동 연장되며,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며 동의합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 미계획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구조감리
회사명	㈜무심종합건축사사무소	다운엔지니어링	다운엔지니어링	다운엔지니어링	-
감리금액	332,180,000	12,100,000	14,300,000	6,600,0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으며,(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2-101-0002300 호	8,124,60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구 분	내 용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p>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p> <p><b>【공사】</b>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b>【주채무자】</b>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b>【분양이행】</b>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b>【환급이행】</b>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p>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li> <li>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li> </ol> <p><b>【대물변제】</b>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허위계약】</b>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li> </ol> <p><b>【입주금】</b>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li> <li>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li> <li>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li> <li>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li> <li>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li> <li>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li> <li>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li> <li>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li> </ol>

	<p>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p> <p>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p> <p>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p> <p>15. 주채무자·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6. 주채무자·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7. 주채무자·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p> <p>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li> <li>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li> </o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보증채권자】</b>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p> </div>
<p style="text-align: center;"><b>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b></p>	<p>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li>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li> <li>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li> <li>4.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li> </o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보증기간】</b>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div> <p>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li> <li>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li> </ol> <p>※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p> <p>※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p>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주식회사 선	㈜도현종합건설	㈜에스에이치종합건설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이앤에스타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로 47-1, 1층(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간월동로 72-7, 103동 지하층 001호(아리이동, 휴안1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234, 104동 근생지04호(영평동, 영평 휴안2차)
법인등록번호	110111-2867418	220111-0203471	110111-1276800	194511-0002802

■ 견본주택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794-11 휴안 하우스갤러리 2층

■ 분양홈페이지 : <https://huan-housing.co.kr/>

■ 분양문의 : 1661-0449

- ※ 본 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